

의안 검토 보고

의안 번호	제 223 호		
건 명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출)자	서초구청장	제안(출)년월일	2001. 10. 5.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김 재 근		

1. 검토내용

가. 제안이유

- 전자정부시대를 맞이하여 홈페이지관리, 사이버민원실 설치운영, 전자우편 보급, 개인정보 보호등 인터넷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므로서 인터넷서비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식 정보화 시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1)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 구성내용과 홈페이지 자료관리, 유료광고제재등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과 홈페이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내지 제7조)
- (2) 사이버민원실의 설치·운영, 인터넷민원처리, 민원처리공개, 민원상담등 사이버민원처리에 필요한 절차와 원칙을 정함. (안 제8조내지 제11조)
- (3) 열린구청장실 주민참여 마당운영등 홈페이지 이용자와 의견교환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내지 13조)
- (4) 행정능률의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공무원과 주민들에게 전자우편의 보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4조내지 제15조)
- (5) 국내·외에 서초구를 홍보할수 있는 외국어 홈페이지 설치·운영근거를 규정함. (안 제16조)
- (6)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와 시스템의 안전대책, 비밀관리에 대한 조치방법과 관리원칙을 규정함. (안 제17조내지 제19조)

2.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지식정보화시대 서초구의 인터넷서비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관련근거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 조례의 주요내용은

- 총7장 20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조례의 제정근거로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를 명시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여 구정발전 도모(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2조)
-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내용을 규정(안 제3조)
- 홈페이지 자료제공 및 삭제대상 근거 및 기준을 제시(안 제6조)
- 인터넷 유료광고 게재 근거마련(안 제7조)
- 사이버민원실 설치 및 운영, 인터넷 민원처리 및 공개, 민원상담등의 처리에 필요한 절차와 내용 원칙등을 규정(안 제8조내지 제11조)
- 구민의 소리등 열린구청장실 운영 및 주민참여마당 운영(안 제12조, 제13조)
- 공무원 및 지역주민들에게 행정능률향상 및 지역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전자우편 ID보급(안 제14조, 제15조)
- 외국어홈페이지운영 근거 규정 마련(안 제16조)
- 개인정보 보호 및 시스템 안전대책을 위한 관련 규정 마련(안 제17조내지 제19조)

□ 검토의견

-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 민원접수처리 각종 유익한 생활정보제공등 이용주민에게 수준높은 행정서비스제공 및 구민의소리 운영등으로 열린행정을 구현하고자 관련 근거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며,
-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5항 및 제7조에도 사이버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2001. 9. 1부터 9. 20까지 서초구보 및 서초구 인터넷에 입법 예고한 바 민원여권과에서 사이버민원실 설치운영 총괄 관리부서를 홈페이지 관리부서로 변경요구가 있었으나 본 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에 의거 민원실에서 접수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신설 업무의 증가로 인한 인력문제등은 집행부에서 정원 조정등의 합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동 조례안은 지식정보화시대 신속한 정보제공 및 업무처리와 공개행정을 위해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1조제2항
- 지방자치법 제9조, 제15조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11조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5항, 제7조제11항

□ 타구 조례(강서구)

[관련법령]

< 정보화촉진기본법 >

제11조 (공공정보화등의 추진)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행정·재정·기술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 12. 29, 1999. 2. 8〉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등에 관한 사무

- 가. 관할구역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관리
- 차.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 및 관리
- 다.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 · 아동 · 심신장애인 · 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 · 운영
- 바.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 · 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 · 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
-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 · 상공업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소류지 · 보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림 · 축 ·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 · 지도
- 마. 농외소득사업의 육성 · 지도
- 바. 농가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관리
- 아. 소규모축산개발 및 낙농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 · 지원
- 카.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 · 지원
-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 시군도의 신설·개수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간역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타. 지방궤도사업의 경영
- 파. 주차장·교통표식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 가. 지역 및 직장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 나. 화재예방 및 소방

제15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지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지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지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처리"라 함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정보의 입력·저장·편집·검색·삭제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장만을 작성하는 등의 단순업무처리를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외한다.
4. "개인정보화일"이라 함은 특정개인의 신분을 지별할 수 있는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
5. "처리정보"라 함은 개인정보화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6. "보유"라 함은 개인정보화일을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것(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기관·단체등에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다른 기관·단체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7. "보유기관"이라 함은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정보에 의하여 지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인"이라 함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3. "고충민원"이라 함은 민원사항중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제11조 (민원실의 설치) 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시행일 1998. 1. 1 : 제11조]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

제2조 (정의) ⑤이 영에서 "사이버민원실"이라 함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민원의 안내, 상담, 신청, 접수, 처리결과의 통지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2000. 10. 13>

제7조 (민원사항의 접수) ①민원사항은 민원실(사이버민원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접수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과(이하 "문서과"라 한다) 또는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에서 접수한다. <개정 2000. 10. 13>